

울산지방법원 2024. 8. 23 선고 2024가단10633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]

전 문

원 고 A중친회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동헌

담당변호사 정만규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변 론 종 결 2024. 5. 31.

판 결 선 고 2024. 8. 23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 B은 원고에게 울산 북구 F 임야 22,915㎡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 중 2분의 1 지분에

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22. 3. 15. 접수 제279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피고 B,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, 피고 C는 30분의 3 지분에 관하여, 피고 E은 30분의 2 지분에 관하여, 각 2020. 5. 7.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G의 후손들로서 만 20세 이상 호주 대표로 구성된 종중이다. 피고 B, D은 원고의 종중원 망 H의 자녀이고, 피고 C, E은 위 H의 아들 망 I의 각 배우자 및 자녀이다.

나. 원고의 종중원인 J, K은 1971. 3. 29.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/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, 이후 K의 상속인인 L이 2000. 6. 30. K의 위 지분에 관하여 1976. 3. 5.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원고는 2018. 2. 4.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H, L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으므로(당시 등기부상으로는 J과 L이 각 1/2 지분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) 그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정리하기로 하는 안건을 다루었다.

라.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울산 북구 M 임야 292㎡, N 답 1,471㎡에 관하여 H 등을 상대로 2020. 5. 7.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0192호로 제기하였다. 위 법원은 2020. 8. 20. H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/6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.

마. 이 사건 부동산 중 J 명의 1/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22. 3. 15. 접수 제27998호로 H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다시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27999호로 피고 B 앞으로 2022. 2. 25.자 증여(이하 ‘이 사건

증여계약'이라고 한다)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고 한다)가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4,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 청구의 요지

가. H는 원고 종중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원고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회복하기로 결의할 당시 원고 종중의 총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거나 H와 피고 B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.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이 사건 부동산 1/2 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H가 2022년 사망하였고, 상속인들인 피고 B, D과 망 I의 상속인인 피고 C, E이 다시금 그 명의수탁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,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, D은 각 1/6 지분에 관하여, 피고 C는 3/30 지분에 관하여, 피고 E은 2/30 지분에 관하여 각 2020. 5. 7.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사실 이외에 피고 B의 행위나 의사에 관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,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명의신탁 재산임을 잘 알면서도 H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를 적극 요청·유도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게 되었다거나(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7다82875 판결 등 참조), H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 위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.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 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임미경